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9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후금융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김소회의원안)	3

I. 개요

1. 김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39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9. 27.

(3) 회 부 일 : 2024. 9.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약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면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후금융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김소회의원안)

현 행	김소회의원안
□ <신 설>	□ 기후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28조의5) ○ 적용대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기후채권’) ○ 면제대상 - 기후채권의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 * 기후채권의 이자소득은 적용기한 이후에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미산입 ○ 적용기한: 2030. 12. 31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김소회의원안 2024. 9. 27. 제출(의안번호 4394)

□ 개정안은 기후채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기후채권에 따른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① 기후채권에 따른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 12. 31.까지 면제하고, ② 적용기한 이후에도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2021. 9. 24.)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내용¹⁾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²⁾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녹색경제활동 등에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채권(이하 ‘기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안에 대해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세금을 면제하고, 적용기한 이후에도 기후채권에 따른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하려는 것으로, 기후채권으로의 자본 유입이 촉진되어 녹색산업에 대한 자

1)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55)」

제9조(채권발행)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제1항의 채권과 관련한 원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채권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금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우리나라 또한 이상기후³⁾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최근 30년간(1991년~2020년) 연평균기온은 과거(1912년~1940년)에 비해 1.6℃ 상승하였고, 여름길이는 20일 증가, 겨울 길이는 22일 감소하였으며, 최근 폭염 및 호우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체감이 증가하고 있음.

2022년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로 강수량 기록이 경신되었고, 여름철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기록적이었던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도 8월말 기준 평균폭염일수는 평년보다 13.4일 많은 24.0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음⁴⁾.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자산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후채권 투자에 따른 이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적용기한 이후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해 기후채권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후채권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상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적용기한이 경과하더라도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1850~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약 1℃(0.8~1.2℃)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발표함.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3중의 혜택이 부여되어 기타 채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⁵⁾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⁶⁾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⁷⁾,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투입 규모와 기후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한 정책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제도의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국세감면액(A)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14,305
국세수입총액(B)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4,122,410
국세감면율[A/(A+B)]	14.8	13.5	13.0	15.8	15.3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13.6	14.3	14.6	14.3	14.6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셋째, 개정안은 기후채권 따른 이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기한(2030

5)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6) 0.7%p

7) 2023년 결산 기준 56조 4,000억원, 2024년 추정치 29조 6,000억원

년 12월 31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⁸⁾에 대한 예외로 현재 「소득세법」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대상⁹⁾과의 유사성과 정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
 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
 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8)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9) 비실명이자 및 이자소득,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